

2024년 인천지방검찰청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 공고

인천지방검찰청 공고 제 2024 - 39 호

인천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일시·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9일
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

1.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

지원코드	채용 분야	응시 번호
인턴01	행정	2024-01(박**), 2024-02(최**), 2024-03(박**), 2024-04(조**), 2024-05(허**), 2024-06(정**), 2024-07(문**), 2024-08(조**)

※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응시 번호 및 이름 앞 1자리로 표기

2. 면접일정 및 장소

면접 일시	면접 장소
2024. 4. 4.(목) 14:00 (13:50까지 입실)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(학익동) 인천지방검찰청 9층 중회의실

※ 2024. 4. 4.(목) 13:30부터 면접 대기실 입실 가능(진행요원 별도 안내 예정)

○ 응시자 지참물 : 신분증, [붙임1]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, 주민등록초본
(병역사항포함)

※ 대상자에 한해 **원본** 지참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 관련 장애인 증명서,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2에 따른 자격증, 취업 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개별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

3.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

-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: 2024. 3. 29.(금) ~ 4. 2.(화)
- 제출서류 : 주민등록초본(병적사항포함), [붙임1]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
- 제출방법 : 증빙서류는 **e-mail**로 접수(확인 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)
 - e-mail : jmr1605@spo.go.kr
 - ※ **e-mail 제목** 및 **제출서류 파일명**은 반드시 **성명(지원코드_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)**
[예 : 홍길동(인턴01_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)]으로 기재
 - ※ **제출서류는 파일명 "성명(지원코드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)[예: 홍길동(인턴01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)]"로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**

4. 면접시험 방법

- 자기소개서 등을 통한 질의·응답 방식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
 - ※ 평정요소 : 1.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, 2.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, 3.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, 4.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
- 위 4개 항목에 대해 ‘상, 중, 하’ 로 평가하며 ‘중, 하’ 의 개수와 상관없이 ‘상’ 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가 1순위, ‘상’ 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‘중’ 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가 1순위
 - ※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‘하’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‘하’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
 - ※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

5. 최종합격자 발표일

- 최종 합격자 발표일 : 2024. 4. 15.(월)
 - ※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(www.spo.go.kr/incheon) 알림 소식(고시·공고) 및 나라일터(www.gojobs.go.kr)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반드시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- ※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, 포기,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유의 사항

- 모든 응시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춰 입실해야 하며, 지정된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응시자는 면접시험장(응시자대기실)에 입장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.
- 면접시험 중 외부인과의 접촉이 금지되며, 시험 종료 후에도 대기 중인 응시자와의 접촉을 금지합니다.
- 면접시험이 끝날 때까지 통신, 검색 등의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(휴대전화, 무선이어폰, 스마트밴드 등)는 소지하지 않거나, 전원을 꺼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면접시험 정지 및 응시가 불가합니다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채용서류의 거짓작성,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(☎ 032-860-454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1]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 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4. . .

성명 :

(서명)

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